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030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태년·김영배·김준형

김태선 · 권칠승 · 한민수

박지원 · 송기헌 · 박홍배

정준호 · 염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공하고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 악화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년 청년 구직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과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지원 신청인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 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	사후관리) ①
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	
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	
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	
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	
부터 <u>1년</u> 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u>2년</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	
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	
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	
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다. <u><단서 신설></u>	<u>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u>
	취업지원 신청인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
	급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